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5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황명선·황정아·조인철

이기헌 • 민병덕 • 차지호

송재봉 • 이정문 • 염태영

이해식 · 서미화 · 한준호

조계원 · 장경태 · 김민석

문진석 • 박수현 의원

(17일)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 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 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발행 현황
- 3.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발행할 수 있다"를 "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u>다.</u>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
	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발행 현황
	3.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
	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u>사항</u>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
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1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i	령령으로 정한다.
제4	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	
-	
1	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조세감
1	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	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
1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7	할 수 있다 <u>.</u>
제]	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지원) ①
-	
_	
_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 ② · ③ (생 략)
-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 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u>할</u> 수 있다.

② (생략)

	_
<u>하여야 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_
실태조사) ①	_
	_
	_
	_
	_
<u>3년마다 실시하여야 현</u>	<u>}</u>
<u>다</u> .	
② (현행과 같음)	